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16호 2015. 12. 30. (수)

선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299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거창군 조례 제2300호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거창군 조례 제2301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거창군 조례 제2302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 30
거창군 조례 제2303호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 ····· 34
거창군 조례 제2304호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 39
거창군 조례 제2305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거창군 조례 제2306호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거창군 조례 제2307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거창군 조례 제2308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거창군 조례 제2309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거창군 조례 제2310호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 ····· 78
거창군 조례 제2311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80
거창군 조례 제2312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1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195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 104
거창군 규칙 제1196호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 138
거창군 규칙 제1197호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177
거창군 규칙 제1198호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79

훈 령

거창군 훈령 제391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184
거창군 훈령 제392호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 규정 폐지규정 ····· 198
거창군 훈령 제393호 거창군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처리규정 폐지규정 ····· 200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69호 도로명주소 고시 ····· 202
거창군 고시 제2015-170호 거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3-66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4
거창군 고시 제2015-171호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고시 ····· 207
거창군 가북면 고시 제2015-1호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고시 ····· 209
거창군 고제면 고시 제 2015-1호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고시 ····· 21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1133호 보 상 계 획 공 고 ····· 213
거창군 공고 제2015-1135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 217
거창군 공고 제2015-1136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 ····· 218
거창군 공고 제2015-1138호 2015년 12월중 거창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고 ····· 222
거창군 공고 제2015-1139호 거창군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소로3 - 95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226

회람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299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거 창 읍	상 림 리	종래 상동 일원, 종래 송정리 일원 중 225-2, 1059-2~1059-35번지 및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7-1번지
	중 앙 리	종래 하동 일원
	대 동 리	종래 동동 일원
	대 평 리	종래 중동 일원 중 대평리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김천리 일원 중 46, 47-2번지
	김 천 리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46, 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종래 대평리 일원 중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
	송 정 리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산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1004~1047, 1085~1087, 225-2, 1059-2~1059-35번지를 제외한 지역
	정 장 리	종래 정장리 일원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6~1638, 1642-1~1642-7, 1647-2번지
	장 팔 리	종래 장팔리 일원 중 406-1~406-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 1635번지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거 창 읍	서 변 리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1147-60, 1147-62, 1147-63, 1147-69~1147-82, 1147-84~1147-96, 1147-99~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1147-122, 464-1~464-3, 464-5, 464-6, 465-1, 480-1, 481-1~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학리 1047-4, 1047 -31번지와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
	동 변 리	종래 동변리 일원
	학 리	종래 학리 일원 중 1047-4, 1047-3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1147-60, 1147-62, 1147-63, 1147-69~1147-78, 1147-82, 1147-84~1147-94, 1147-99, 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1147-122, 464-1~464-3, 464-5, 464-6, 465-1, 480-1, 481-1~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
	양 평 리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1147-79~1147-81, 1147-95, 1147-96, 1147-100, 1147-101번지
	가 지 리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3-7번지를 제외한 지역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주 상 면	도 평 리	종래 도평리 일원
	연 교 리	종래 연교리 일원
	내 오 리	종래 내오리 일원
	완 대 리	종래 완대리 일원 및 종래 농산리 일원 중 1939~1950번지
	성 기 리	종래 성기리 일원
	거 기 리	종래 거기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리 일원
웅 양 면	동 호 리	종래 동호리 일원
	죽 림 리	종래 죽림리 일원
	노 현 리	종래 노현리 일원
	산 포 리	종래 산포리 일원
	군 암 리	종래 군암리 일원
	신 촌 리	종래 신촌리 일원
	한 기 리	종래 한기리 일원
고 제 면	농 산 리	종래 농산리 일원 중 1939~1950번지를 제외한 지역
	개 명 리	종래 개명리 일원
	봉 산 리	종래 봉산리 일원
	봉 계 리	종래 봉계리 일원
	궁 항 리	종래 궁항리 일원
북 상 면	갈 계 리	종래 갈계리 일원
	소 정 리	종래 소정리 일원
	농 산 리	종래 농산리 일원
	병 곡 리	종래 병곡리 일원
	산 수 리	종래 산수리 일원
	월 성 리	종래 월성리 일원
	창 선 리	종래 창선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위 천 면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리 일원
	상 천 리	종래 상천리 일원
	강 천 리	종래 강천리 일원
	황 산 리	종래 황산리 일원
	당 산 리	종래 당산리 일원 및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
	모 동 리	종래 모동리 일원
마 리 면	영 승 리	종래 영승리 일원
	율 리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를 제외한 지역
	월 계 리	종래 월계리 일원
	말 흘 리	종래 말흘리 일원
	고 학 리	종래 고학리 일원
	대 동 리	종래 대동리 일원
	하 고 리	종래 하고리 일원 및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산1004 ~ 산1047, 1085~1087번지
남 상 면	춘 전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 일원
	진 목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진목리 일원
	둔 동 리	종래 둔동리 일원
	오 계 리	종래 오계리 일원
	무 촌 리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1638, 1642-1~1642-7,

		16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팔리 일원 중 406-1~406-4번지
	송 변 리	종래 송변리 일원
	대 산 리	종래 대산리 일원 및 종래 월평리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 1380, 1380-2, 1380-4, 1380-5, 1380-11, 1382-1, 1518, 1518-2, 1520-1, 1520-2, 1526-1, 1527, 1527-1, 1527-2, 1527-3, 1528-1, 1532-2, 1532-3, 1539-1, 1539-4, 1540, 1540-2, 1545-2, 1545-3, 1545-4, 1601-3, 1601-5, 산149-3, 산149-4, 산180, 산185-2, 산193-7, 산193-8, 산193-9, 산194, 산202번지
	월 평 리	종래 월평리 일원 중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 1380, 1380-2, 1380-4, 1380-5, 1380-11, 1382-1, 1518, 1518-2, 1520-1, 1520-2, 1526-1, 1527, 1527-1, 1527-2, 1527-3, 1528-1, 1532-2, 1532-3, 1539-1, 1539-4, 1540, 1540-2, 1545-2, 1545-3, 1545-4, 1601-3, 1601-5, 산149-3, 산149-4, 산180, 산185-2, 산193-7, 산193-8, 산193-9, 산194, 산202번지를 제외한 지역
	전 척 리	종래 전척리 일원
	임 불 리	종래 임불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남 하 면	둔 마 리	종래 둔마리 일원
	양 항 리	종래 양항리 일원
	무 릉 리	종래 무릉리 일원
	대 야 리	종래 대야리 일원
	지 산 리	종래 지산리 일원
신 원 면	수 원 리	종래 수원리 일원
	양 지 리	종래 양지리 일원
	구 사 리	종래 구사리 일원
	과 정 리	종래 과정리 일원
	덕 산 리	종래 덕산리 일원
	청 수 리	종래 청수리 일원
	중 유 리	종래 중유리 일원
	대 현 리	종래 대현리 일원
	와 룡 리	종래 와룡리 일원
가 조 면	석 강 리	종래 석강리 일원,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 및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가 조 면	기 리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
	대 초 리	종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를 제외한 지역
	동 례 리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
	사 병 리	종래 사병리 일원
	마 상 리	종래 마상리 일원
	수 월 리	종래 수월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가 조 면	일 부 리	종래 일부리 일원,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번지**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번지
	도 리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를 제외한 지역
가 북 면	우 혜 리	종래 우혜리 일원
	박 암 리	종래 박암리 일원
	몽 석 리	종래 몽석리 일원
	용 암 리	종래 용암리 일원
	중 촌 리	종래 중촌리 일원
	해 평 리	종래 해평리 일원
	용 산 리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02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현재 조성 중인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대산리와 월평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종래 남상면 월평리** 1380, 1380-2, 1380-4, 1380-5, 1380-11, 1382-1, 1518, 1518-2, 1520-1, 1520-2, 1526-1, 1527, 1527-1, 1527-2, 1527-3, 1528-1, 1532-2, 1532-3, 1539-1, 1539-4, 1540, 1540-2, 1545-2, 1545-3, 1545-4, 1601-3, 1601-5, 산149-3, 산149-4, 산180, 산185-2, 산193-7, 산193-8, 산193-9, 산194, 산202번지

⇒ **남상면 대산리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0. 19. ~ 11. 08.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0호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 군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을 식별할 수있는 정보를 말한다.
7.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며, 군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을 말한다.
8. “기자단”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각종 콘텐츠 생산·게재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민원창구 운영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다만, 이 경우”를 “이 경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를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7조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장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을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로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를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의 처리공개 및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군수가 정하는 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를“군수가 정하는 민원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군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장 제목 “전자우편 ID 보급“을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자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기자단 등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상품, 명함, 단체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	**제2조(정의)** ----------

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신 설>	----------각 호------ 1.------이란---------- 2.----------이란---------- 3.------란 군이----------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란---------- 7.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며, 군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8. “기자단”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각종 콘텐츠 생산·게재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 군수----------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 2. (생 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 ④ (생 략)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생 략) ②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② ----------각 호---------- 1. ~ 2. (생 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5.「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6.---------- 7. 그 밖에----------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경우---------- ----------사람---------- 1. ~ 7. (현행과 같음)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현 행	**개 정 안**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 ----------다만,----------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의 처리 공개 및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군수가 정하는 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군수가 정하는 민원에 한정하여---------- ② 전자민원창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 략)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전자민원창구---------- ③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생 략)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 ----------**전자민원창구**---------- ---------- ---------- ---------- ② **전자민원창구를**---------- ---------- ----------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5장 소셜미디어 운영 제14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자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현 행	개 정 안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기자단 등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상품, 명함, 단체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삭 제>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4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자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군수는 기자단 등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상품, 명함, 단체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행정과장 이 환 철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03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정부3.0 추진에 맞춰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참여의 기회 확대와 양방향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원고료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게시판 게시자료 삭제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다. 전자우편ID보급 조항 삭제(제5장,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24조

○「전자정부법」제9조·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 29,568천원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31. ~ 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1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군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위촉하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군이**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5년마다 수립하여야**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 3. (생 략) ④ ~ ⑦ (생 략)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③ (생 략)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 책임관을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 ② (생 략)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행정자치부장관----------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04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변경함(안 제4조·제11조·제18조)

○ 행정안전부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나. 지원대상사업 삭제함(안 제15조제3항, 제17조)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안 제17조제1항·제2항)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운영비 명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삭제함(안 제1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 제1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전자정부법」제5조, 제65조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제3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31. ~ 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제6조제3항)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2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거창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

조제2항에 따라 군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지방세법」제128조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05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안 제4조)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나.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현행) 51개 조문 ⇒ (개정) 9개 조문

다. 서류 송달의 방법(안 제5조)

다.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7조)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자동차등록령」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3호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거창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06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상위법인「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2조)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25조문 ⇒ (개정) 15조문으로 축조

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던 것을 삭제하여 본문을 간결화함.(안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4호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표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또는 발급기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에 인영 될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

③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인증기·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표 1]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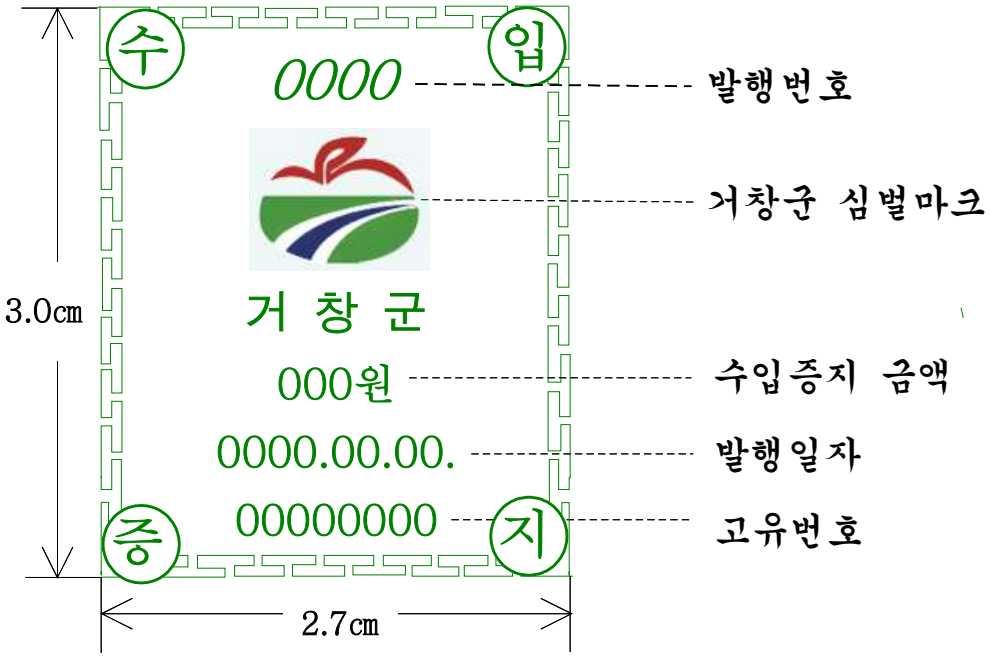

※ 인영 색상 : 녹색

[별표 2]

고무인 (제5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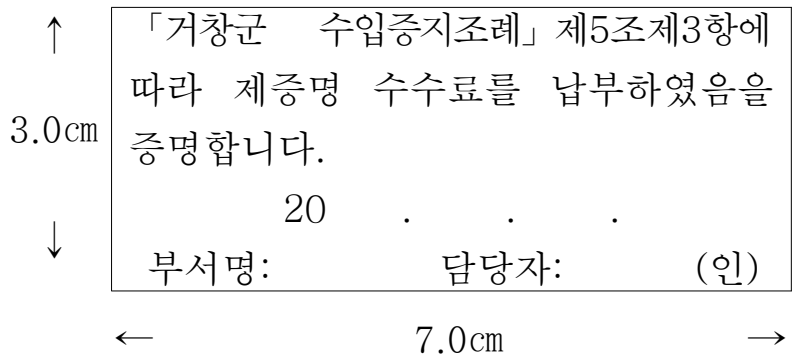

[별지 서식]

수입증지 일일결산 대장

년 월 일

결			
재			

□ 총 괄

고 유 번 호	총 누계		일 계		전날까지 누계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 금일발행 내역

○ 납부액 : 원 (그날 발행분 : 원, 신용카드결재분 : 원)

○ 권종별 발행내역

연 번	권 종 별	발 행(A)		결 손(B)		정 산(C=A-B)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합 계						
	면 제						
	공 용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						

□ 결손사유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07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방안”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모양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수입증지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전자수입증지 사용 명문화(안 제3조)
다. 전자수입증지의 표시·규격·모양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라. 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과 변상책임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마.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금고에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기 위한 부칙 신설(부칙 제2조)
사.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 폐지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및 보관, 출납, 판매 등 종이 수입증지 관련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137조(수수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15. ~ 11. 0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5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자에 한한다.”를 “사람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장애인”으로 “자가”를 “장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별표 1의2,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 11.15)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의 종결 전 취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 2. (생 략) 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1. ~ 2. (생 략) 3. ---------- ---------- ---------- ---------- ---------- ----------사람에 한정한다. 4. ---------- 장애인----------장애인이----------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2. 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의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500	
3) 제적등본	1통	500	
4) 제적초본	1통	3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500	
	연도 추가	100	
6) 토지(임야)대장	1통	300	
	추가 1장당	100	
7) 건축물대장	1통	300	
8) 자동차등록원부(관내)	1통	200	
~~9) 자동차등록원부(관외)~~	~~1통~~	~~200~~	
9) 건설기계등록원부(관내)	1통	300	
~~11) 건설기계등록원부(관외)~~	~~1통~~	~~1,000~~	
10) 농지원부(관내)	1통	500	
1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500	

[별표 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08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방법을 변경함(안 제5조)

나.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 개선함(안 제6조)

다. 수수료 감면 대상 중 법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개선함(안 제7조)

라.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변경함(안 별표 1의2)

○ 건설기계등록원부 관내·외 구분없이 ⇒ 300원으로 통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3 개정사항 반영('14.11.07.개정)

마. 정보공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12.10.개정)별표의 개정사항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3조 별표 2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관련부서(민원봉사과 등) 의견 수렴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27. ~ 11.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6호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4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조언하게 하기”를 “응하기”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16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8항-- ---------- ---------- ---------- ----------
제4조(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제4조(설치 및 기능) ---------- ---------- ----------응하기---------- ----------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6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촉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 이상으로 한다. 1. ~ 3. (생 략)	제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총괄과장-------- ----------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법 제16조제2항 및 제8항----------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위탁) ① ~ ⑥ (생 략)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09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유지(‘15.12.31까지 존속기한 규정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조항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함(안 제5조)

○ 삭제 : 위원회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

나. 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함(안 제6조)

○ (현행) 건설교통과장 ⇒ (개정) 안전총괄과장

○ 신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 35만원(위원참석수당)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7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을 “부담금”으로 “때에는 국세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 ---------- ---------- ---------- ---------- ---------- ---------- ---------- ---------- ---------- ---------- ----------
<단서 신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 ---------- ---------- ---------- ----------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을---------- ---------- ----------경우에는---------- ----------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10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에 따라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 명시하였으나, 우리 군의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함

나. 거창군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안 제6조)

다. 가산금 규정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23. ~ 11.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제4조제1항단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8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종전의 제14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3호·제4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호, 제1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

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기타”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동”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장 및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타”를 “다른”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조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2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별지 제1호·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이란----------에 따른----------에 따른 ---------- ---------- ---------- 2.----------이란---------- ---------- ----------에 따른- ---------- ---------- ---------- ---------- ---------- ---------- ---------- 3.---------이란---------- ---에 따른---------- ----------에 따른 ---------- ---------- ---------- 4.----------이란--------- ---------- ----에 따른---------- ---------- ---------- ----------

현 행	개 정 안
5. "대행"**이라 함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구조물의 철거,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 (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7. ~ 11. (삭제 2004.02.10) **12. "문전수거"라 함은 배출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가 직접 상차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13. (삭제 2004.02.10) **14.**"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이란**---------- ---------- ---------- ---------- 6.----------**이란**---------- ---------- ---------- ---------- **<삭 제>** **7.**-------**이란**---------- ---------- ---------- -----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에 따른**----------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한다) 기타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에 따른----------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에 따른----------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⑤ ~ ⑥ (삭제 2004.02.10)	
⑦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⑦ ----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에 따른**---------- ---------- ------**해당**---------- ---------- ----**같은**---------- ---------- ---------- ---------- ② ----------**에 따른**---------- ----------**에 따른** ----------**해당**---- ---------- ---------- ---------- ----------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에 따른**---------- ------**에 따른**---------- ---------- ② ----**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에 따라----------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에 따른----------
제3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삭 제>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설등을 추가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 ③ (생 략) 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⑥ (생 략)	제16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③(현행과 같음) ④----------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⑤ 제2항에 따른----------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생 략)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4.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쓰레기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에 따라**---------- ----------**다른**---------- ------**경우** 4. **그 밖에**----------**경우** ② ----**에 따른**---------- ---------- ---------- ----------
제19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9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4. (생 략) ② **동조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은 별표 4의 1 기준에 의하고 봉투판매가격은 별표4의 2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각 호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수료의 감면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 (생 략) **제25조(보고, 검사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등의 요구가 있을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등)**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현행과 같음) **제25조(보고, 검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11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2015. 7. 1)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내용 반영하여 쓰레기봉투 감면대상 구체화함. (안 제23조)

○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용어순화 및 법령 인용조문 변경함.

○ 이라 함은 ⇒ 이란, 당해 ⇒ 해당, 동 ⇒ 같은, 기타 ⇒ 그 밖에,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및 제7조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09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를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별표 2”를 “영 별표 4”로 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다.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로법」 제66조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지하굴착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삭 제>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군수는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 ----------제3조- ---------- ---------- ---------- ----------영 별표 4------- ----------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2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생 략)	제7조(시행규칙) (현행 제9조와 같음)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12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도로법」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단순 확인·재기재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함(안 제1조)

○ 「도로법」제41조 ⇒ 「도로법」제66조

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 삭제함(안 제3조·제4조)

○ 징수의 위임, 점용의 허가신청

다.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내용 변경함(안 제3조 ~ 제6조)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 「도로법 시행령」별표 3·4 적용

○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 : 「도로법 시행령」제71조 등 적용

○ 점용료 감면사항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점용료 감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제66조·제68조,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70조·제71조·제73조, 별표 3·별표 4, 「도로법 시행규칙」제3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제19조·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19. ~ 11. 1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10호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15 ~ 113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도로법」('14.5.21.시행)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직접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117조,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01. ~ 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11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을 “제1항은”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용하며 도로 가시권의 옹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53조제1항제1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

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본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1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3조제3항 중 “하천”을 “재해·재난”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과 제62조 사이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2조와 제7장 사이에 제2절(제73조·제7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3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제74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1. (생 략)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 4.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3.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에 따라**----------
<신 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에 따라**----------

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도로 가시권의 옹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준용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를 적용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1.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 ~ 21.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1. ~ 18. (현행과 같음) 19.----------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신 설>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신 설>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 설>	제56조의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 ---------- 제32조에 따라 ---------- ------ 60퍼센트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생 략) 1.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 ~ 21. (생 략)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3(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 설>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한국시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시학진흥재단 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계획·건축·도로·하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재해·재난----------
<신 설>	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 <신 설> 제62조(기능) (생 략)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2조(기능)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3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신 설>	제74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 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후계농업경영인·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농업인·전업수산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별표 15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나목, 다목,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후계농업경영인·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농업인·전업수산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에서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14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정방법 현실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거 신설(안제20조의2)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호, 안 제24조의2)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28조)
마.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3조제4항)
바.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2)
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3)
아.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4)
자. 녹지지역의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5)
차.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6)
카. 축사 등 농업용시설 건폐율 상향조정(안 제57조)
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3)
파. 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4)
하. 군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거.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73조, 안 제7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5. ~ 11. 2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312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593,290원”을 “1,653,830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생 략) ② 월정수당은 월 1,593,290원으로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653,830원------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107

제출일자	2015. 12. 14.
제 출 자	**이성복 의장 외 10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인“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도 월정수당에서 3.8%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6조제2항)

- 1,593,290원 ⇒ 1,653,83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지방자치법」제33조

(2)「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나. 예산 조치 :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다. 집행부의견조회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15.11.26~12.3/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규칙 제1195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세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군 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및「거창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수령하고, 직접 교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군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군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제9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10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군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매월「지방재정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군세에 대한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군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 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군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군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세를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군세환급금의 지급) 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

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군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군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64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군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2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의 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직접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물건	수령인 관 계	서명	수령 일자	미교부 사 유
누 계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 목	년도 / 기분	납 세 의 무 자		송 달 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 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 (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 송 달			공시송달일자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징수 □ 감액 □ 결손] 결정결의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 당		납 액 통 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세입년도	년도 세입		
	관		결정내용	본 세	가산금	계
	항		세 액			
			가 산 세			
	목		결 정 액			

결 정 세 액	금 원(₩)		
납 세 인 원	시(군) 읍·면(동) 외 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내 역 서

구분 / 읍면동	과세표준	세율	징수(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 세	가산금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징수(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부

결 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년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세입(징수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발의일 :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결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 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납세자(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읍면)

과세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납세자(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군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과세번호	연도/기분	납세의무자		납세자(법인)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지방세 체납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 호		성 명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	연 도	납 기	과세번호	독 촉		체납세액						합 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뒷 면)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 거 확 인	재 산 확 인
1. 납세자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극빈자 확인	**재조사 확인**
1. 가옥 :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 극빈, 구호대상 3.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년도 / 기분	책호 /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계	지방세환급금 본세	지방세환급금 가산금	환급대상자 성명	환급대상자 주소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금	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가산금 계	충당	구좌경정	명령번호	지급명령액	담당자	담당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월계																											
연도계																											
총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구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및통지액 ④	차인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 역	년도/기분(월)	환급금액	합 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 의 (서명날인)	비 고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법인)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담 당		충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총액	과오납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총액	충당액	납세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채권자	성 명		납세자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납세자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 분 금 액		금 원정		
예 탁 장 소				
예 탁 일 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국세징수법」제8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구비서류: 배분계산서등본 통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납세자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 각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관계되는국세의금액				

채 권 자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채 권 금 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 위	성 명	납세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 액	교 부 일	비 고
기 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갑)]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 장	부군수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과 장) :

※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갑)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갑)]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 장	부군수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납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 원)

(단위 : 원)

세 목 명	납부기한	지방세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 납 요 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위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91

제출연월일	2015. 11. 23.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변경함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나.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현행) 100개 조문 ⇒ (개정) 25개 조문으로 축조

다.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및 징수결정(안 제5조 ~ 제7조)

라. 납세고지서 작성 및 납기마감 처리 등(안 제8조 ~ 제10조)

마. 부과 취소 및 변경, 결정취소 및 오류정정(안 제11조 ~ 제12조)

바. 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미수납액의 이월 등(안 제13조 ~ 제15조)

사. 군세 환급 처리, 지급, 충당, 통지 등(안 제16조 ~ 제19조)

아. 납세담보 범위,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안 제20조 ~ 제24조)

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규칙 제1196호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거창군)

접수 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 량	세 율	세액	납부일	결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팀 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거창군)

과세 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팀 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일련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감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팀원	팀장	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팀원	팀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거창군)

접수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팀원	팀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팀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팀원	팀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팀원	팀장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팀원	팀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 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 밖의(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납부일자	팀원	팀장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거창군)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팀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거창군)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팀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거창군)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팀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공 부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공 부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거창군)

접수번호	토지 면적 / 건물 면적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 호 / 전화 번호	납세자 주 소	과 세 표 준	비과세		사후관리내용								결재		
								1차	확인내용	4차	확인내용	7차	확인내용	10차	확인내용	팀원	팀장	과장
						재 산 세	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부동산)	2차	확인내용	5차	확인내용	8차	확인내용	11차	확인내용			
						합 계		3차	확인내용	6차	확인내용	9차	확인내용	12차	확인내용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팀원	팀장	과장

(단위 : 원, ㎡)

신청 연월일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산세부과내역						물납 신청내역						물납 허가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세목 / 과세대상	과세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당초 납부세액	신청세액	종류	소재지	면적		물납부동산 평가가액	통지일	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	등기일 (물납일)
												토지	건물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팀원	팀장	과장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산세부과내역						분납 신청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세목	과세대상	과세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납기내 세액	분납세액	분납기한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팀원	팀장	과장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시)

연번	물건소재지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			신고사항		직권지정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신고사유	통지일	처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법 인 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⑦ 전 자 우 편 주 소	

신 고 내 용

□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⑧자동차번호	⑨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 성 요 령

□ 신고인(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내용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차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자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⑩ ~ ⑫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그 밖에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거창군)

접수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소		자동차번호	연세액	제1기분		제2기분		결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납부 세액	납부일	납부 세액	납부일	팀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거창군)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 소		자동차번호	연세액	10퍼센트 공 제	납부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팀 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7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거창군)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 소		자동차번호	근거법령	신고(직권) 비 과 세	비과세 사 유	비과세 세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팀 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거창군)

접수 번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수입 신고 수리일	주행세 신고 납부일	주행세 신고일	주행세 납부일	송금일	결재		
	주소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계	휘발유	경유						팀 원	팀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거창군)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팀원	담당	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93

제출연월일	2015. 11. 23.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상위법인「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옴에 따라,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변경함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나.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처리 및 보통징수 방법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주민세 관련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안 제5조 ~ 제9조)

라. 지방소득세 징수 방법을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마.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방법과 납세관리인 지정 관련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6조)

바. 자동차세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 방법 규정(안 제20조,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규칙 제1197호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의안 번호	2015 ~ 103

제출연월일	2015. 11. 23.
제 출 자	건설과장

1. 폐지이유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근거와 기준이 「도로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관련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01. ~ 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규칙 제1198호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직영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의 학교급식 관리책임자가 된다.

⑦ 운영위원회를 보조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20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기당 1회”를 “매월 한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학교급식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탁기관 관리자
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주사

3.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4.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5.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6.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7. 군내 교원단체 추천인
8.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별 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
3. 월별 급식지원센터 운영사항 점검
4. 운영인력, 집행, 경비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제8조제7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학교급식관련 담당주사가 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1.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명
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3명
3. 수탁기관 관계자 3명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상정의안 사전 검토 조정
2.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
3.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추진 점검
4. 식재료 공급단가 사전조사 및 협의
5. 식재료의 품질, 규격 등의 협의
6.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협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생 략) ② 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직영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의 학교급식 관리책임자가 된다.
<신 설>	⑦ 운영위원회를 보조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 ----------10명----------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직영시 센터장은 농촌활력과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학교급식 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군수가 구성한다. 1. 센터장 2. 거창군 교육지원청 보건급식 담당자 3. 군 위생업무 담당자 4. 군내 친환경 생산자 2명 5.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2명 6.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2명 7.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2명 8.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 9. 군내 교원단체 추천인 1명 10. 군내 학교운영위원 2명 11.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3명 1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탁기관 관리자 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주사 3.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4.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5.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6.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7. 군내 교원단체 추천인 8.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④ (생 략) ⑤ 회의는 **분기당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간사가 필요시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인원, 사업 진행방식 등에 관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배송자 추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⑤ ----**매월 한 차례**---------- ----------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 1.---------- **2. 월별 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 **3. 월별 급식지원센터 운영사항 점검** **4. 운영인력, 집행, 경비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실무협의회)** ① 제8조제7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학교급식관련 담당주사가 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1.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명 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3명 3. 수탁기관 관계자 3명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상정의안 사전 검토 조정 2.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 3.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추진 점검 4. 식재료 공급단가 사전조사 및 협의 5. 식재료의 품질, 규격 등의 협의 6.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협의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113

제출연월일	2015. 12. 16.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현행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을 반영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

○ 운영위원회를 보조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나.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행화(안 제9조)

○ 위원 수 : 20명 이내 ⇒ 10명 이내

○ 운영위원장 : 농촌활력과장 ⇒ 학교급식관련 담당과장

○ 회의 : 분기당 1회 ⇒ 매월 한 차례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화(안 제10조)

라.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신설(안 제13조)

○ 위원장은 학교급식관련 담당주사가 되며 10명 이내로 구성함

○ 기능 : 식재료 공급단가 사전조사 및 협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26. ~ 12.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훈령 제391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창조산업”을 “항노화산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새주소”를 “토지정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본청 실·과에 두는 담당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창조산업과에 창조전략, **창조산업**, 평생교육, 에너지담당을 둔다. 5. (생 략) 6. 민원봉사과에 민원, 지적, **새주소,** 위생담당을 둔다. 7. ~ 1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항노화산업,** ----------. 5. (현행과 같음) 6. ---------- **토지정보,** ---------. 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제8조 관련)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창 조 산 업 과	창조전략 ~~창조산업~~ **항노화산업** 평생교육 에너지	1. 창조도시 추진 계획 수립 및 전략사업 개발 2. 지역 내재적 자원 발굴 3. 창조도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4. 공모사업 총괄관리 5. 국가예산 신규 전략사업 발굴 6. 창조발전협의회 운영 7.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총괄 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9.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 수립 10.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11. 경남지역균형발전사업 총괄 12. 과내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업무 13. 창조산업 발굴·육성(천문우주문화도시 등) 14. 거창 창포원 원예박람회 관련 15. 거창읍 창조거리 활성화사업 16. 창조도시관련 문화산업 육성 **17. 항노화산업 기획과제 발굴·지원** **18. 거창 항노화 힐링산업 육성사업** 19.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20. 평생학습센터 운영 21.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23.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24. 평생학습축제 개최 25.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26.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27.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8. 초·중·고·대학 육성지원 29. 교육환경 개선사업 30. 거창군 장학회 운영 31. 거창교육발전특별위원회 운영 32.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 33. 세자녀 가정 및 전입세대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34.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35.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 종합기획, 추진 36. 신재생(청정) 에너지 보급 지원(육성) 37. 에너지 도시 자매결연 추진 38. 녹색발전소 및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 육성 39. 에너지 자립 실천운동 및 교육 40. 전기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민 원 봉 사 과	민 원 지 적 ~~새 주 소~~ 토지정보 위생담당	1. 민원시책 추진 2. 민원 1회방문 처리 3. 민원제도개선 4. 민원사무 접수 및 점검 5. 민원안내 및 상담 6.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창구즉결 민원처리 7. 어디서나 민원, 정보공개, 민원24 8. 여권 업무 9. 자동차등록 10. 건설기계등록 11. 자동차,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12. 전자민원 처리 13. 수입증지 관리 14. 과내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업무 15.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16. 지적공부의 복구 17. 지적통계 분석 18. 지적측량성과 검사 19. 토지이동 사항 정리 20. 조상땅 찾아 주기 21. 지적측량기준점의 보존·관리 22. 지적측량장비 관리 23. 지적측량수행자의 지도·감독 24.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25.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26.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27. 토지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28. 지적창구 민원업무 처리 29. 지적불부합지 관리 및 정리 30.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민 원 봉 사 과		3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관리 32. 지적행정시스템 운영·관리 33. GPS상시관측소 관리 34.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35.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추진 36.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3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38. **도로명주소사업**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운영 39.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운영 ~~**40.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40.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41. 도로명주소의 유지관리 42. 도로망 및 도로구간의 설정 43.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44. 도로명관리시스템 운영·관리 45.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46.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47.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관리 48.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및 구축 49. 도로명주소 정보검색 및 서비스 제공 50. 도로명주소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51.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관리·운영 52. 전산시스템 도로명 변경추진 53. 사용자권한 및 보안관리 54. 도로명의 변경신청 처리 **55. 공간정보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 56. 지명위원회 운영 57. 토지거래통계 및 예고지표 관리 5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부과·징수 59.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60.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61. 부동산 실명법 운영 6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관리 63. 외국인토지 관리 업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민 원 봉 사 과		64. 식품접객업소 허가(신고) 관리 65. 공중위생업소 신고 관리 66.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 관리 67. 식품 소분·운반·판매업소 신고 관리 68. 조리사 및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69.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70.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관리용역업소 지도관리 71. 음식문화 개선사업(모범음식점 관리 포함) 7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신고 관리 73. 건강기능식품 신고 관리 74. 유통식품관리 및 위해식품 공표·회수 관리 7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관리 운영 76. 유전자재조합(GMO) 식품 유통관리 7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78. 식중독예방 관련 업무 79.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80.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81.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82.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83. 식품수입판매업 신고 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녹 색 환 경 과	환경관리 환경정비 수질관리 녹색성장	1.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2.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환경사범 수사 및 사건 송치 6. 환경보전위원 관리 7.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8 소음배출시설 허가·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9. 토양유발시설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10. 자동차 배출시설 지도점검 11. 악취배출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13.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14.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6.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 운영 관리 17.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18. 다중이용시설 관리 및 점검 19. 환경보전기금 운용 및 관리 20. 환경순찰차량 관리 21.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관리 22.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업무 23. 유해조수 포획허가 및 관리 2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25. 과내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업무 26.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 27. 생활폐기물 대행업소 관리 28.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 29.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30.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녹 색 환 경 과		31.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32.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3.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4. 친환경상품 관리에 관한 사항 35.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36. 클린코리아 추진에 관한 사항 37. 폐기물처리업체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38.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39. 사업장 폐기물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40. 지정폐기물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41. 의료폐기물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42. 잔류성 유기화합물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43.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44. 소각시설 운영 관리~~ 44. 폐기물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46. 1회용품 지도 단속 47.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48. 수질종합대책 기본계획 수립 49. 가축분뇨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5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50.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및 지도점검 51.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관리 및 지도점검 52.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53.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54. 수질오염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5. 수질개선사업 계획 수립 56. 수질 및 지하수 측정망 관리 57.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준공검사 58.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및 영향조사기관 등록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녹 색 환 경 과		59.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추진 60. 수질관련 환경사범 수사 및 사건송치 61.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62.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3. 수질오염총량제와 개발사업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64.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수리 및 지도 점검 6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준공 및 지도점검 66.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 및 지도점검 67.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점검 68.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69. 유독물질 관리 및 지도점검 70. 그 밖에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및 지도점검 71. 녹색성장 관련업무 총괄 72. 녹색성장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73. 녹색성장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74.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5. 녹색성장 시책개발 및 추진 76. 녹색성장 관련 교육 및 홍보 77. 분야별 녹색성장 관련 시책 장려 78.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 79.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80.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81. 탄소포인트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 82.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83. 온실가스 감축 대응에 관한 사항 84. 그린리더 인력 양성 및 운영 85.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실천 운동 전개 86.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87.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88. ISO 14001에 관한 사항 89. 생태공원 운영 및 조성사업 추진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건 설 과	건 설 농업기반 하 천 도 로	1.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2. 소관 국(국토해양부)·공유재산 관리 3.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4. 소규모 건설공사 및 시설물유지관리 5. 건설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6. 새마을 편입부지 등기 7. 재정건의사업 시행 8.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9. 과내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업무 10. 합천댐 주변지역지원 및 정비사업 11. 건설사업 보상 12. 건설기계 및 조종사 면허 지도·단속 관리 ~~1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수립~~ 13. 경지정리사업 14. 밭기반정비사업 1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6. 개간 인가(허가) 17.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9. 전원마을조성사업~~ 18. 한해대책 및 장비유지관리 19.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20.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21. 저수지 유지관리 22. 농업 기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23. 소규모용수개발사업 24.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26. 일반농산어촌개발(면소재지정비)사업 유지관리 27.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 28. 소관 국(농림수산식품부)·공유재산 관리 29.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30. 국가 및 지방하천 위임업무 31. 하천(소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32. 폐천부지 및 공유수면 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건 설 과		33.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협의 34. 국·공유재산 관리(하천, 소하천) ~~38. 하천(소하천)보상 및 등기업무~~ 35. 하도개선(준설)사업 36. 골재 채취업 등록 및 채취허가(하천골재) 37. 기성제 정비사업 38. 하천(소하천) 재해예방·복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2. 하천(소하천) 감시업무(관리상황 점검)~~ 39.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40.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41.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42.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수립 43.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44. 상급 도로건설에 대한 실시설계 종합검토 추진 45. 각급 도로망 건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 46.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관리 47. 지방도 유지관리 48. 접도구역 관리 49. 도로표지판 설치 및 사후관리 50.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관리 51.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52. 사도관리 53. 도로관리원 및 장비관리 54. 지방도, 군도 적치물, 노점상 관리 55. 과적차량 단속 56. 위험도로 구조개선 5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9. 도로파손 및 교통장애물 제거 60. 기술감리 교육 61. 제한차량 운행허가 62. 국책사업 추진관리 63. 지방도사업 추진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상수도 하수도	1. 사업소 운영 전반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상·하수도 사용량의 검침 3.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4. 상·하수도 계량기 교체 및 관리(지하수 포함) 5. 일반회계 예산편성, 운영(계약 등) 및 집행결산 6.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계약 등) 및 집행결산 7.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관리 8.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자산관리 9.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경영평가 1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조정 및 부과·징수 11. 상수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12.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 13. 지방상수도 사업계획 및 시행 14. 취수원 수질관리 15. 취·정수장 운영관리 16. 취·정수장 기계, 전기 시설 관리 17. 상수도 수질관리 18. 먹는 물 수질검사 19.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20. 비상급수대책 수립 21. 상수도 기동수리 22. 신규 급수공사 2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24.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25.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6. 상수도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27. 전용상수도사업 설치인가 28. 유수율 제고사업 29. 노후관 교체공사 및 관망도 관리 30.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상 하 수 도 사 업 소		31.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 32. 먹는물 공동시설 및 먹는 샘물 관리 33. 저수조 관리 34. 생활용수 개발 및 사후관리 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36. 하수관거 정비사업 37.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38. 배수설비 설치(협의) 39. 하수도 사용 인·허가 40.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41. 거창군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42. 거창·가조하수처리장 위·수탁관리 43. 분뇨처리장 위·수탁관리 및 처리수수료 징수 44.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위·수탁관리 및 설치사업 45. 거창군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46. 상·하수도 GIS관리시스템 운영 47. 하수도관련 민원처리 48. 하수도관련 예산관리 49. 중수도 설치 기술지원 50. 재이용수공급시설 설치 및 관리 **51. 소각시설 운영관리** **5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5 ~ 111

제출연월일	2015. 12. 16.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항노화산업육성업무 관련담당 신설 및 새주소업무 정착에 따른 담당명칭 변경과 업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2. 주요내용

가. 창조산업담당 ⇒ 항노화산업담당(안 제3조제1항제4호, 별표)

나. 새주소담당 ⇒ 토지정보담당(안 제3조제1항제6호, 별표)

다. 세부분장사무 변경 및 삭제, 이관, 신설(안 별표)

○ 변경

- 수리시설 정비사업 ⇒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 기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 **농업** 기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 국·도유 재산(하천) 관리 ⇒ 국·공유재산 관리(하천, 소하천) 등

○ 이관(녹색환경과⇒상하수도사업소)

- 소각시설 운영관리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 삭제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수립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 신설

- 항노화산업 기획과제 발굴·지원
- 공간정보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훈령 제392호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 규정 폐지규정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 규정 폐지규정

의안 번호	2015 ~ 89

제출연월일	2015. 11. 23.
제 출 자	행정과장

1. 폐지이유

○ 국가정보통신망은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행정자치부「행정정보통신망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되며, 전자문서는 행정자치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자체적인 훈령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 규정」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제62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통신망운영관리규정」(대통령 훈령)

- 행정자치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문서의 전자적 처리 및 문서유통에 관한 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거창군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처리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5년 12월 30일

거창군 훈령 제393호

거창군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처리규정 폐지규정

거창군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처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처리규정 폐지규정

의안 번호	2015 ~ 97

제출연월일	2015. 11. 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 거창군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처리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국세징수법」과 2011년 지방세 3법 분리에 따라 「거창군세 기본조례」,「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면 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기타 물건 등 압류 재산의 매각대행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2. 주요내용

○「거창군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처리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거창군세 기본조례」 제36조(공매) ~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59조(수의계약) ~ 제74조(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증명)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15 - 16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2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실길 205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개별고시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실길 205	2009-12-28	2015-12-24	들 이름을 이용하여 가실길로 명명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5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202	2009-04-01	2015-12-24	고대라는 사람이 마을을 열었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790-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2길 27	2009-04-01	2015-12-24	19세기 초 순조 때 이곳에 살던 진사 이지유의 호를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403-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구암길 67	2009-04-01	2015-12-24	마을 어귀에 여러개의 바위가 있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149-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송계로 1773	2009-12-28	2015-12-24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26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593-233	2009-12-28	2015-12-24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15-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당2길 150	2009-04-01	2015-12-24	모동에 따른 작은 마을의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81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383	2009-12-28	2015-12-24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94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015-10	2009-07-02	2015-12-24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5 - 170호

거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3-66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92-465호(1992. 12. 24.)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6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5. 12. 23.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 업 명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교통 시설 (도로)	정장리(소로3-66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거창	정장	소로	3	66	268	6.0	1,761	거창읍 정장리 929-20	거창읍 정장리 803-1	경고465호 ('92.12.24)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6. 03. 01.

○ 준공 예정일 : 2017.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거창읍 정장리	-	-	13,582	1,761					
1	거창읍 정장리	929-20	대	5	5	-	거창군			
2	"	929-21	대	4	4	-	거창군			
3	"	929-18	대	3	3	-	거창군			
4	"	929-22	대	10	10	-	거창군			
5	"	929-23	대	34	34	-	거창군			
6	"	산22-6	임	39	39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5	장육수 외4인			
7	"	929-17	과	55	55	-	거창군			
8	"	930-1	전	140	140	-	거창군			
9	"	927-2	대	49	49	-	거창군			
10	"	921-3	대	43	43	-	거창군			
11	"	921-4	대	37	37	-	거창군			
12	"	909-2	대	41	41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00	조소철우			
13	"	911-5	대	76	76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53	전 동 판			
14	"	911-2	도	582	33	-	거 창 군			
15	"	895-2	도	28	1	-	거 창 군			
16	"	876-1	대	138	138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9	강승태 외1인			
17	"	797-1	대	22	22	-	거 창 군			
18	"	799-1	대	347	6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이 영 진			
19	"	792-1	대	23	23	-	거 창 군			
20	"	1167	도	2188	51	-	국(건설부)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1	거창읍 정장리	산25-4	임	22	22	-	거 창 군			
22	"	산147	임	260	161	-	국(건설부)			
23	"	929-24	대	31	31	-	거 창 군			
24	"	929-19	대	13	13	-	거 창 군			
25	"	1176	도	883	255	-	국(건설부)			
26	"	934-12	도	15	15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이 명 창			
27	"	934-11	대	24	24	-	거 창 군			
28	"	934-10	대	14	14	-	거 창 군			
29	"	1172	구	628	184		국(농수산부)			
30	"	910-3	전	8	8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26	최 정 순			
31	"	910-1	도	40	4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유 병 근			
32	"	875-2	대	20	20	-	거 창 군			
33	"	1166	도	221	47		국(건설부)			
34	"	800-1	대	6	6	-	거 창 군			
35	"	791-1	대	92	9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36	현 한 순			
36	"	803-1	대	12	1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97	조 영 이			
37	"	921-5	대	7	7	-	거 창 군			

거창군 고시 제 2015-171호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28.

거 창 군 수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47,910,156	431,746,767	16,163,389	3.74%
일 반 회 계	399,802,877	384,930,282	14,872,595	3.86%
특 별 회 계	48,107,279	46,816,485	1,290,794	2.7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1,645,192	20,000,084	1,645,108	8.23%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7,433,185	9,586,163	△2,152,978	△22.46%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4,212,007	10,413,921	3,798,086	36.47%
기 타 특 별 회 계	26,462,087	26,816,401	△354,314	△1.32%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3,870	810,000	△106,130	△13.1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18,281,528	18,272,500	9,028	0.05%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36,331	733,060	3,271	0.45%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679,718	2,216,718	△537,000	△24.23%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4,164,718	4,181,250	△16,532	△0.40%
주 차 장 관 리 특 별 회 계	860,922	567,873	293,049	51.60%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	35,000	35,000	0	0.00%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447,910,156	431,746,767	16,163,389	3.74%
지 방 세 수 입	19,898,290	19,421,446	476,844	2.46%
세 외 수 입	15,265,117	16,968,507	△1,703,390	△10.04%
경 상 적 세 외 수 입	9,998,102	12,204,712	△2,206,610	△18.08%
임 시 적 세 외 수 입	5,267,015	4,763,795	503,220	10.56%
지 방 교 부 세	192,573,683	192,000,000	573,683	0.30%
조 정 교 부 금 등	10,000,000	7,236,974	2,763,026	38.18%
보 조 금	135,587,848	135,718,048	△130,200	△0.10%
국 고 보 조 금 등	110,807,512	110,409,938	397,574	0.36%
시 도 비 보 조 금 등	24,780,336	25,308,110	△527,774	△2.09%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74,585,218	60,401,792	14,183,426	23.48%
보 전 수 입 등	53,848,791	42,850,245	10,998,546	23.48%
내 부 거 래	20,736,427	17,551,547	3,184,880	18.15%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47,910,156	431,746,767	16,163,389	3.74%
일 반 공 공 행 정	28,590,587	23,189,084	5,401,503	23.29%
공 공 질 서 및 안 전	6,315,812	3,719,451	2,596,361	69.80%
교 육	4,826,844	5,007,931	△181,087	△3.62%
문 화 및 관 광	11,617,829	17,263,399	△5,645,570	△32.70%
환 경 보 호	58,492,330	53,622,812	4,869,518	9.08%
사 회 복 지	86,384,597	85,520,982	863,615	1.01%
보 건	7,234,334	7,634,413	△400,079	△5.24%
농 림 해 양 수 산	95,234,570	103,760,816	△8,526,246	△8.22%
산 업 · 중 소 기 업	7,605,519	10,810,455	△3,204,936	△29.65%
수 송 및 교 통	17,629,157	17,214,594	414,563	2.4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7,427,784	31,346,472	△3,918,688	△12.50%
예 비 비	36,777,464	13,919,116	22,858,348	164.22%
기 타	59,773,329	58,737,242	1,036,087	1.76%

거창군 가북면 고시 제2015 - 1호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김영규 외 42인	주 소	별첨내역 참조
하 천 명 (하천등급)		가천천, 우가천 일원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2076-1번지 외 59필지		
	면 적	별첨내역 참조		
	점용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 2019년 12월 31일까지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		

하 천 점 용 연 장 허 가 내 역

허가 번호	하천명	허가자 주소			토지소재지				사용 목적	점용기간
		면	리	성 명	면	리	번지	지적		
	소계							20,991		
1	가천천	가북	연곡길	김영규	가북	우혜	2076-1	572	전	2015.1.1~ 2019.12.31
2	가천천	가북	우혜1길	손석진	가북	우혜	2076-1	117	전	2015.1.1~ 2019.12.31
3	가천천	가북	우혜1길	손석진	가북	우혜	2076-1	695	전	2015.1.1~ 2019.12.31
4	가천천	가조	원천1길	손정식	가북	우혜	2076-1	56	전	2015.1.1~ 2019.12.31
5	가천천	가북	연곡길	김영규	가북	우혜	2076-6	624	전	2015.1.1~ 2019.12.31
6	가천천	가북	연곡길	김영규	가북	우혜	2076-6	315	전	2015.1.1~ 2019.12.31
7	가천천	가북	연곡길	김영규	가북	우혜	2076-6	947	전	2015.1.1~ 2019.12.31
8	가천천	가조	원천1길	손정식	가북	우혜	2076-6	26	답	2015.1.1~ 2019.12.31
9	가천천	가조	원천1길	손정식	가북	우혜	2076-6	920	답	2015.1.1~ 2019.12.31
10	가천천	가조	원천1길	손정식	가북	우혜	2076-6	697	답	2015.1.1~ 2019.12.31
11	가천천	가조	원천1길	손정식	가북	우혜	2076-6	493	답	2015.1.1~ 2019.12.31
12	가천천	가조	원천1길	손정식	가북	우혜	2076-6	145	답	2015.1.1~ 2019.12.31
13	가천천	가북	우혜1길	손석진	가북	우혜	2076-6	357	답	2015.1.1~ 2019.12.31
14	가천천	가북	우혜1길	손석진	가북	우혜	2076-6	770	답	2015.1.1~ 2019.12.31
15	가천천	가북	우혜2길	손방옥	가북	우혜	2076-6	686	답	2015.1.1~ 2019.12.31
16	가천천	가북	우혜2길	손방옥	가북	우혜	2076-6	33	답	2015.1.1~ 2019.12.31
17	가천천	가북	가북로	강종훈	가북	우혜	2076-6	459	답	2015.1.1~ 2019.12.31
18	가천천	서울강동	양재대로	정인호	가북	용산	1076	1,684	답	2015.1.1~ 2019.12.31
19	가천천	가북	용산1길	정재혁	가북	용산	1076	1,062	답	2015.1.1~ 2019.12.31
20	가천천	가북	용산리	박문우	가북	용산	1076	109	답	2015.1.1~ 2019.12.31
21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신윤조	가북	용산	1074-5구	78	답	2015.1.1~ 2019.12.31
22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신윤조	가북	용산	1074-5구	186	답	2015.1.1~ 2019.12.31
23	가천천	가북	용산1길	전창식	가북	용산	1074-5구	26	답	2015.1.1~ 2019.12.31
24	가천천	가북	가북로	정동호	가북	용산	582	558	답	2015.1.1~ 2019.12.31
25	가천천	가조	병산2길	신기생	가북	용산	639-7	311	답	2015.1.1~ 2019.12.31
26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전광진	가북	용산	640-2	454	답	2015.1.1~ 2019.12.31
27	가천천	부산진구	마철로	이두상	가북	용산	639-3	734	답	2015.1.1~ 2019.12.31
28	가천천	가북	가북로	임종철	가북	용산	1074구	673	전	2015.1.1~ 2019.12.31
29	가천천	가북	용산1길	전영시	가북	용산	1074구	37	전	2015.1.1~ 2019.12.31
30	가천천	가북	용산1길	정재목	가북	용산	1074구	48	전	2015.1.1~ 2019.12.31

31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전희진	가북	용산	1074-5구	61	대	2015.1.1~2019.12.31
32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이영순	가북	용산	1074-5구	226	대	2015.1.1~2019.12.31
33	가천천	가북	가북로	한흥교	가북	용산	1076-4	168	전	2015.1.1~2019.12.31
34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어병기	가북	용산	1076-4	255	전	2015.1.1~2019.12.31
35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이근배	가북	용산	1076-13	773	전	2015.1.1~2019.12.31
36	가천천	가북	가북로	정동호	가북	용산	1076-21	105	전	2015.1.1~2019.12.31
37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이일순	가북	용산	1076	84	전	2015.1.1~2019.12.31
38	가천천	가북	용암로	곽정구	가북	우혜	2076-1	142	전	2015.1.1~2019.12.31
39	가천천	가북	용산1길	변 연	가북	용산	1074-3구	66	대	2015.1.1~2019.12.31
40	가천천	가북	용산1길	최종숙	가북	용산	1074-3구	33	대	2015.1.1~2019.12.31
41	가천천	가북	용산리	임무철	가북	용산	1074-3구	201	대	2015.1.1~2019.12.31
42	가천천	부산금정	금강로	이창순	가북	용산	1074-3구	207	대	2015.1.1~2019.12.31
43	가천천	가북	가북로	이상조	가북	용산	1074-3구	244	대	2015.1.1~2019.12.31
44	가천천	가북	가북로	김옥배	가북	용산	1074-5구	295	대	2015.1.1~2019.12.31
45	가천천	가북	가북로	노영순	가북	용산	1074-5구	249	대	2015.1.1~2019.12.31
46	가천천	서울강동	양재대로	정인호	가북	용산	1074-5구	270	대	2015.1.1~2019.12.31
47	가천천	가북	가북로	신정성	가북	용산	1074-5구	262	대	2015.1.1~2019.12.31
48	가천천	가북	용산1길	정정호	가북	용산	1074-5구	205	대	2015.1.1~2019.12.31
49	가천천	가북	가북로	전분이	가북	용산	1074-5구	149	대	2015.1.1~2019.12.31
50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조영래	가북	용산	1074-5구	31	대	2015.1.1~2019.12.31
51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전정식	가북	용산	1076-4	141	전	2015.1.1~2019.12.31
52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오순연	가북	용산	1076-4	241	대	2015.1.1~2019.12.31
53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정봉호	가북	용산	1076-4	207	대	2015.1.1~2019.12.31
54	가천천	가북	용산2길	정봉호	가북	용산	1076-4	138	대	2015.1.1~2019.12.31
55	가천천	가북	가북로	한흥교	가북	용산	1076-4	94	대	2015.1.1~2019.12.31
56	가천천	가북	용산리	문일순	가북	용산	1076-2	70	대	2015.1.1~2019.12.31
57	가천천	가북	용산1길	용산이장	가북	용산	1076-2	783	대	2015.1.1~2019.12.31
58	가천천	가북	가북로	박희자	가북	용산	1076-2	152	대	2015.1.1~2019.12.31
59	가천천	가북	용산리	이복숙	가북	용산	1076-2	156	대	2015.1.1~2019.12.31
60	우가천	가북	우혜	변진수	가북	우혜	2046-1	1,111	잡종	2015.1.1~2019.12.31

거창군 고제면 고시 제 2015 - 1 호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김암우 외 29인	주 소	별첨내역 참조
하 천 명 (하천등급)		황강천, 상개명천 일원		
공 사 (점용·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791-1번지 외 42필지		
	면 적	별첨내역 참조		
	점용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		

거창군 공고 제2015 - 1133호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에 계획된 「**대동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81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28.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동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81호선) 개설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0.0m, B=8.0m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33-1번지 외 28필지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 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4)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게는 본 신문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3,658	1,399					
1	거창읍 대동리	33-1	도	1,809	83	-	거창군			
2	거창읍 대동리	32-3	대	227	225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거창농업협동조합			
3	거창읍 대동리	964-1	도	19,153	39	-	국(건설부)			
4	거창읍 대동리	31-6	대	159	9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31-6	박정자	근저당권	거창농업협동조합	
5	거창읍 대동리	30-3	대	104	6	서울 강남구 개포동 503 개포1차우성아파트 5-1305	이지민			
6	거창읍 대동리	83-11	대	57	19	거창군 거창읍 동동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95 럭키아파트 3-1301	정남권 김진식			
7	거창읍 대동리	946-46	대	24	21	-	국(재무부)			
8	거창읍 대동리	85-7	전	281	24	-	거창군			
9	거창읍 대동리	85-11	전	54	54	-	거창군			
10	거창읍 대동리	85-4	대	280	3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71	김심순	전세권	구진우	
11	거창읍 대동리	87-3	대	189	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9-1	원정규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2	거창읍 대동리	87-11	대	89	14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7-11	이영자			
13	거창읍 대동리	965-22	대	33	4	-	국(재무부)			
14	거창읍 대동리	15-9	대	172	115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8-10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7-11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5-9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00-4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5-9	민정현 이영자 이삼식 강연순 조현석			
15	거창읍 대동리	15-4	천	370	42	-	국(건설부)			
16	거창읍 대동리	943-21	천	355	24	-	국(건설부)			
17	거창읍 대동리	943-20	도	8,467	58	-	국(건설부)			
18	거창읍 대동리	32	대	676	18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거창농업협동조합			
19	거창읍 대동리	31-7	대	136	51	거창군 거창읍 동동 31	최현수			
20	거창읍 대동리	30-4	대	163	98	거창군 거창읍 동동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95 럭키아파트 3-1301	정남권 김진식			
21	거창읍 대동리	83-21	대	47	47	-	거창군			
22	거창읍 대동리	30-5	대	158	3	경남 창원시 용호동63 롯데아파트 9-203	배춘석			
23	거창읍 대동리	946-31	대	99	76	-	국(재무부)			
24	거창읍 대동리	86-2	전	71	71	-	거창군			
25	거창읍 대동리	86-1	전	336	9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9-1	원정규			
26	거창읍 대동리	87-21	전	142	104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9-1	원정규			
27	거창읍 대동리	87-25	도	7	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7-2	구재모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8	거창읍 대동리	965-23	대	20	20	-	국(재무부)			
29	거창읍 대동리	15-1	대	211	5	거창군 거창읍 동동 1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541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7-2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5-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31 베어스타운 103-603	허경만 정정희 구재모 조옥봉 배길동	근저당권	신젠타코리아 주식회사	

거창군 공고 제2015 - 1135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5년 12월 28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목 적 :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 업 지 구 명 : 춘전지구
3.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산17번지
4. 사업시행면적 : 지적면적 46,016㎡
   신청면적 4,895㎡
5. 사 업 개 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 사 업 비 : 23,000천원(부지조성 3,500천원, 기타 19,500천원)
7. 사 업 기 간 : 2015. 12 ~ 2016. 12.(12개월)
8. 이의신청기간 : 2015. 12. 28 ~ 2016. 01. 28.(30일간)
9.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거창군 공고 제2015 - 1136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07-48(2007.12.06)호 최초 결정, 거창군 고시 제2008-15(2008.03.13)호로 최초 인가한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12. 29.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거창컨트리클럽)사업

나) 명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3. **사업의면적 : (변경없음)** 1,843,303㎡(회원제18홀, 대중제9홀)

○ 토지이용계획계획

합 계	소계/(구분)	체육시설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 지
1,843,303㎡	1,231,869㎡/(18홀)	283,736㎡	12,470㎡	73,001㎡	862,662㎡
	611,434㎡/(9홀)	144,125㎡	330㎡	25,572㎡	441,407㎡

○ 건축계획 : 건축연면적 11,503.10㎡, 클럽하우스 외 3동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구 분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성 명
당 초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65-1 대덕리치아노 102-2008	장영건설산업(주) 대표이사 김성수
변 경	경남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 대표이사 박영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08년 3월 13일 ~ 2015년 3월 12일

○ 변경 : 2008년 3월 13일 ~ 2017년 3월 12일

6. **사업 설계도**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공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10.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4필지		2,669,183	1,843,303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자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자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자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9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자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7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자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9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자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7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자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31	23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자축은행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23	42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3	83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36	1,23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2,656,341	1,830,46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13	신원면 덕산리	산52	임	4,165	4,1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14	수원백씨농계공파종중(대표자:백정석)			
14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182	2,18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유한회사소울파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파트너스	

거창군 공고 제2015 - 1138호

2015년 12월중 거창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고

2015년 12월중 우리군 거창, 가조, 위천, 웅양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정수 수질검사

검 사 항 목		수질기준	정수장별 수질검사결과			
			거 창	가 조	위 천	웅 양
미 생 물	일반세균	100CFU/mℓ 이하	0	0	0	0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불검출/100m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 강 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납(Pb)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소(F)	1.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소(As)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세레늄(Se)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은(Hg)	0.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시안(CN)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크롬(Cr)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성질소(NH_3-N)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질산성질소(NO_3-N)	10mg/ℓ이하	4.2	1.7	0.2	2.6
	카드뮴(Cd)	0.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보론(B)	1.0mg/ℓ이하	0.01	불검출	불검출	0.01
건 강 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페놀	0.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다이아지논	0.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파라티온	0.06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페니트로티온	0.04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카바릴	0.07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디클로로메탄	0.02mg/ℓ이하	0.001	불검출	불검출	0.001
	벤젠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톨루엔	0.7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에틸벤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크실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다클로로에틸렌	0.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사염화탄소	0.0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다이옥산	0.050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검사항목		수질기준	정수장별 수질검사결과			
			거창	가조	위천	웅양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유리잔류염소	4.0 ㎎/ℓ이하	0.50	0.70	0.30	0.20
	총트리할로메탄	0.1 ㎎/ℓ이하	0.040	0.029	0.060	0.026
	클로로포름	0.08 ㎎/ℓ이하	0.024	0.020	0.055	0.013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 ㎎/ℓ이하	0.011	0.006	0.006	0.008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 ㎎/ℓ이하	0.005	0.003	불검출	0.004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 ㎎/ℓ이하	0.0023	0.0023	0.0045	0.0021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 ㎎/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 ㎎/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 ㎎/ℓ이하	0.0014	0.0013	0.0025	0.0018
	할로아세틱에시드	0.1 ㎎/ℓ이하	0.008	0.007	0.024	0.007
	포름알데히드	0.50 ㎎/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심 미 적 영향물질	경도	300 ㎎/ℓ이하	75	55	26	6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ℓ이하	2.3	1.6	3.2	2.6
	냄새	무 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맛	무 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동(Cu)	1 ㎎/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색도	5도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세제(ABS)	0.5 ㎎/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소이온농도(pH)	5.8 - 8.5	7.0	7.0	6.6	7.3
	아연(Zn)	3 ㎎/ℓ이하	0.008	0.008	0.007	0.002
	염소이온(Cl^{-1})	250 ㎎/ℓ이하	17.5	9.9	3.3	15.7
	증발잔류물	500 ㎎/ℓ이하	82	55	42	96
	철(Fe)	0.3 ㎎/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망간(Mn)	0.05 ㎎/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탁도	0.5NTU 이하	0.05	0.05	0.09	0.05
	황산이온(SO_4^{-2})	200 ㎎/ℓ 이하	11	5	2	11
	알루미늄(Al)	0.2 ㎎/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수도꼭지 수질검사

정수장명	시료채수장소	검 사 결 과			
		일반세균 (100cfu/㎖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	유리잔류염소 (4.0㎎/ℓ이하)
거 창	거창읍 공수들7길 17	0	불검출	불검출	0.41
	거창읍 하동1길 58	0	불검출	불검출	0.56
	거창읍 중앙로1길 67	0	불검출	불검출	0.30
	거창읍 강남로 266	0	불검출	불검출	0.47
	거창읍 동동3길 5	0	불검출	불검출	0.47
	거창읍 거열로 154-6	0	불검출	불검출	0.53
	거창읍 거열로4길 92	0	불검출	불검출	0.42
	거창읍 수남로 2181	0	불검출	불검출	0.31
	거창읍 운정1길 120	0	불검출	불검출	0.20
가 조	가조면 가조가야로 1117	0	불검출	불검출	0.45
	가조면 지산로 1478	0	불검출	불검출	0.54
위 천	위천면 원학길 402	0	불검출	불검출	0.22
웅 양	주상면 당대고개길 17	0	불검출	불검출	0.25

※ 위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해당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급수지역의 대표지점 결과입니다.

3.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구 분 \ 정수장별		거 창	가 조
수도꼭지 채수위치		거창읍 중앙로1길 67	가조면 지산로 1478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일반세균	100/㎖이하	0	0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불검출	불검출
3.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불검출/100㎖	불검출	불검출
4. 암모니아성 질소	0.5㎎/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5. 동	1㎎/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6. 아연	3㎎/ℓ이하	0.003	0.003
7. 철	0.3㎎/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8. 망간	0.05㎎/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9. 염소이온	250㎎/ℓ이하	17	10
10. 유리잔류염소	4.0㎎/ℓ이하	0.30	0.54

※ 위 수도관 수질검사는 해당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급수지역의 대표지점 결과입니다.

4. 급수과정별 각 지점 수질검사

구 분 \ 거창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급수과정별 채수위치		주배수지		급수구역 유입부		관말 수도꼭지		
검사항목	수질기준	전	후	1	2	1	2	3
1. 일반세균	100/㎖이하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불검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암모니아성 질소	0.5㎎/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총트리할로메탄	0.1㎎/ℓ이하	0.031	0.027	0.027	0.028	0.031	0.030	0.031
6. 동	1㎎/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3	0.008	불검출	0.010
7. pH	5.8 ~ 8.5	6.9	6.8	6.8	6.8	6.8	6.9	6.9
8. 아연	3㎎/ℓ이하	0.006	0.004	0.009	0.007	0.027	0.015	0.016
9. 철	0.3㎎/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탁도	0.5NTU	0.09	0.09	0.09	0.09	0.09	0.07	0.09
11. 유리잔류염소	4.0㎎/ℓ이하	0.56	0.52	0.44	0.47	0.38	0.33	0.36

※위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거창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각 지점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5. 검토 및 판정

□ 위 검사결과 우리군 4개 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는 먹는물 수질기준 58개 항목에 적합하므로 안심하고 음용하셔도 됩니다.
(수질검사기관: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측정검사센터,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6. 정수장별 급수구역

구분 \ 정수장별	거 창	가 조	위 천	웅 양
급수구역	상림리,중앙리,대동리,김천리,송정리,대평리,운정,정장,국농소,노혜,김용,교촌,중촌,동산,절부,양평,마동,새동네,들성,장팔,모곡,사마,동변,개화,성산,샛담,남상면월평	마상리(전마을),장기,월포,방촌,역촌,부산,상촌,가조온천지구,석강농공단지	장기,창촌,후방,상천,서원,강남,덕거,면동,마항,강동,사마,거차,남산,금곡,황산,수승대	강천, 노현, 화동, 원촌, 상도평, 동호, 원성기, 정동, 송정, 도평
정수장 관리자	이석형, 강종찬, 조동성, 신광용, 표주태, 임원종			
정수장 연락처	940-8680			

□ 정수장 관리책임자 :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경 기
□ 수질문의 :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담당자 강경구 【☎ 055-940-8680, 8699, 국번없이 121】

7. 당부사항

수돗물 절약 및 수질관리 등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거지나 야채를 씻을 때, 세면 또는 양치시에는 물을 받아 사용하고 빨래는 모아서 세탁하는 등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상수도관의 수돗물 누수를 조기에 찾아 보수하기 위해 **누수신고 포상금(거창시장사랑 상품권 3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목격한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940-84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나 **옥내수도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박테리아, 조류, 이물질 퇴적, 관 부식 등으로 인해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어도 수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기적(6개월 1회이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수돗물은 병원성미생물(장티푸스, 바이러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염소 소독을 하고 있으며 **소독으로 인해 소독약품(염소)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을 받은 후 **20~30분간 깨끗한 곳에 놓아두면 염소 냄새가 없어지고** 공기중의 산소가 녹아들어 청량감이 좋아지게 됩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보관**할 시에는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하고 청결한 곳**에 보관하고 미생물의 증식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음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맛은 체온과 비슷할 때 가장 맛이 없고 **물의 온도를 4~14℃ 정도로 유지**하면 용존산소량 증가와 **청량감도 있어 보다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은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농협)에 인터넷뱅킹, ATM기기, 창구 등에서 무통장 입금방식을 이용하여 요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달 말일 수용가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고 **요금의 1%(최대 5,000원)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거 창 군 수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거창군 공고 제2015 - 1139호

거창군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소로3 - 95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95호선 외 2개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12. 28.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95호선)	거창	송정	소로	3	95	65	6.0	393	거창읍 송정리 60-5~52-1번지	경고256호 ('77.4.25)	2015.12.~ 2017.12.31
	도시계획도로 (소로2-61호선)	거창	송정	소로	2	61	60	8.0	536	거창읍 송정리 1063~249-21번지	건고383호 ('71.6.26)	2015.12.~ 2017.12.31
	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5	99	8.0	824	거창읍 대동리 668-23~656-6번지	경고256호 ('77.4.25)	2015.12.~ 2017.12.31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3 - 95호선 외 2개 노선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소로3-95호선	합계	-	-	-	7,228	393					
	1	거창읍 송정리	60-5	도	14	4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60-1	김 용 분			
	2	"	30-4	대	365	160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0-4	김 화 순	근저당권	거창새마을금고	
	3	"	1055-1	도	6,325	98	-	국(건설부)			
	4	"	30-3	대	93	74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2가 476-82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553	김 홍 연 김 정 희			
	5	"	30-2	대	306	13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2가 476-82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553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3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17-25	김 홍 연 김 정 희 민 순 정 종단대순진리회달성방면			
	6	"	52-2	대	89	16	거창군 거창읍 동동4길11,109동405호	이 다 경			
	7	"	52-1	대	36	28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10	추 태 순			
소로2-61호선	합계				5,862	536					
	1	거창읍 송정리	1063	도	1,580	21	-	국(건설부)			
	2	"	245	답	331	2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82-1	이 재 우	근저당권	주식회사 경남은행	
	3	"	246	전	423	207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82-1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0길 7-2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67 102동 2903호	이 영 숙 김 화 영 김 연 우	근저당권 지상권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4	"	1061-15	구	1,308	45	-	국(농림수산부)			
	5	"	249-24	답	206	163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82-1	이 영 숙	근저당권 지상권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6	"	249-13	답	331	5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3-1	박 영 섭			
	7	"	249-21	도	1,683	41	-	거 창 군			

소로2-5호선	합계	-	-	-	1,196	824					
	1	거창읍 대동리	668-23	답	177	177	-	거창군			
	2	"	666-8	잡	494	494	-	거창군			
	3	"	668-21	대	5	5	-	거창군			
	4	"	666-5	도	18	18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6-7	정일종			
	5	"	665-4	전	10	10	-	거창군			
	6	"	656-6	도	492	120	-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64-1번지)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4), FAX(055-940-3579), E-mail :qkrrb00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